

광주지방법원 2021. 6. 15 선고 2020가단549969 판결 [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

담당변호사 박세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치영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6. 1.

판 결 선 고 2021. 6. 1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 요지

원고와 원고의 자녀인 피고는 2015년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, ①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고,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며, ③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시세 기준으로 3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하는 부담부 또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았고,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,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억 원 이상이다.

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, 위 증여계약은 해제조건이 성취되기도 하였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인 사실,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9. 10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증여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담이나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옥희

목 록

1. 광주 광산구 C 대 227㎡

2. 광주 광산구 C

 [도로명주소] 광주 광산구 D

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

 1층 100.48㎡

 2층 62.47㎡

 부속건물

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

 단층변소

 1.89㎡. 끝.